

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[별표 1의2] <개정 2017. 7. 26.>

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(제3조제2항 관련)

품목	구분	최소 수량
카펫	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	100m
	그 밖의 물품	100개
합 판 · 목 재 , 섬유판, 합성 수지판		100장
커튼 등 막류	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	1,000m
	그 밖의 물품	100개
벽지류	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	1,000m
	그 밖의 물품	100개
블라인드류	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	500m
	그 밖의 물품	100개
소파 · 의자		60개 (하나의 소파 · 의자가 여러 좌 석으로 된 경우 에는 하나의 좌 석을 1개로 보 아 산정한다)

비고: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 수량 이하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.